

KCR 4판 초안 제5장‘악보’에 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hapter 5 'music' in the draft of KCR4

정재영(서강대학교 도서관),

Chung jae-young, Sogang University Loyola Library

남태우(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KCR4판 초안의 제5장 ‘악보’부분에 대한 각 조문을 일본 목록규칙(NCR, 1996), 영미목록규칙(AACR2R, 1998), ISBD(PM, 1991)와 비교해 그 차이점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1. 서론

1983년에 간행되어 20여년 동안 사용되어져 온 한국목록규칙 3판(이하, KCR 3판)은 몇몇 목록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이나 고서와 같이 인쇄매체로 기술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점과 전자자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 유형별 기술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록에 사용되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규칙으로 지적되어 왔다.

1996년 목록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2002년에 완성된 KCR 4판 초안은

- 첫째, 표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 둘째,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 셋째,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았다.
- 넷째, 일부용어에 대한 해설을 부록으로 제

시한다¹⁾는 제정원칙과 기술규칙에 기본적으로 KCR 3판의 기술체계를 수용하고,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그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중에 있다.

이 논고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진 KCR4판 초안 중 제5장 ‘악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우선 악보가 자료로서 갖고 있는 특성과 분류·목록·제본 및 배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KCR 4판 초안 ‘악보’부분의 각각의 조문을 영미목록규칙(AACR2R, 1998), 일본목록규칙(NCR, 1996), ISBD(PM)

(1991)과 조문별 비교해 서로 상이한 조항을 발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악보의 특성

음악작품을 필사 또는 인쇄한 형식인 악보는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호·문자·숫자

1) KCR4판 ‘초안의 주요특징’에서 발췌함
(<http://www.korla.or.kr>)

등으로 일정한 기보법에 따라 지면상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²⁾

음악은 본래 시간적 예술이어서 순간마다의 음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연주·감상 등의 근거로서 또한 기억·보존·학습 등의 목적으로서 공간적·시간적인 악보의 형태로 옮겨 놓은 것이다. 결국, 악보란 순간적인 음을 가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연주용 악보는 성부 혹은 악기 전부를 한 묶음으로 표시하여 작품의 전체 세부사항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한 총보(full score)와 각 성부 혹은 각 악기별 악보인 파트보(parts)로 대별된다. 영어에서 스코어(score)는 일반적인 총보를 의미하는데, 총보에는 piano score와 vocal score가 대표적이다.³⁾

이런 악보는 다른 자료와 달리 표제를 정하는 문제 즉, 본표제의 범위에 본표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작품번호, 작곡연도 및 연주수단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식별상 필요한 숫자나 문자 및 책임표시, 발행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주 정보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자료와는 달리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악보를 분류하고 목록하고 보관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보를 음악도서, 녹음자료등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분류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 악보안에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류의 방향과 개별작품 분석이 어렵다. 이런 점들로 인해 수집시 장서의 중복을 초래하고, 이용시 목록을 통한 검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같은 작품에 대한 표제가 언어별, 출판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제를

그대로 옮겨 적는 목록의 일반원칙을 따르게 되면 악보는 같은 작품이 목록의 배열에서 흩어지게 된다. 이 문제는 영미목록규칙에서 통일표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도 이 방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⁴⁾

넷째, 악보자료는 표제면이 없거나 출판년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록작업에 어려움을 준다.

다섯째, 악보의 체제상 다양한 형태로 출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본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

3. 제5장 '악보'의 항목별 문제점 분석

3.1 통일표제

통일표제(Uniform Titles)에 관해서는 AACR만이 다루고 있다.⁵⁾ 특히, AACR의 경우 모든 유형의 통일표제를 묶어 25장 Uniform title에서 다루고 있는데, 법률자료·성서·예배서에 관한 규칙과 함께 악보에 관한 부분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KCR과 NCR은 통일표제에 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KCR 4판 초안 편집 서문에는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동일한 검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표목에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통적인 표목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표목을 목록에서

4)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1957년부터,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1980년부터 통일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5) 5.1.B2. In a supplied title proper, give all of the elements prescribed for uniform titles for music in the order prescribed in 25.25-25.35. [Trios, piano, strings, no.2, op. 66, C minor]

2)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p.5.

3) 이민정, *Ibid.*, p.7.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들을 모두 대등한 값으로 취급하고, 연결수단을 통해 상호 연결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하지만 악보의 특성 즉, 음악자료의 목록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표제의 정보부족, 표제가 없는 경우, 언어 및 표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 그리고 동일한 자료를 같은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통일표제는 악보를 비롯한 몇몇 자료들에 있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영미목록규칙(AACR)의 통일표제에 관한 규칙을 적용했을 경우 규칙이 복잡하고 언어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일표제에 자국의 언어와 관용을 반영하려는 연구가 일본과 국내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小川 昴⁷⁾ 통일표제의 일관성을 위해 통일표제의 기술방법과 언어에서 LC목록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입장을 취했고, 손정표의 규칙은⁸⁾ 언어는 국문으로 하되 기술방법은 LC목록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혜인의 규칙은⁹⁾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형식표제에서 관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연주수단을 악곡 형식 앞에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김정열의 연구¹⁰⁾에서는 고유표제인 경우 원작의 언어

로 통일표제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널리 알려진 영어표제가 있는 경우 굳이 생소한 외국어로 된 작품의 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해 일방적으로 통일표제에 관한 규정을 없앨 것이 아니라 법률, 성서자료, 악보등과 같이 표제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들에 대한 통일표제의 적용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고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2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중 자료유형 및 기술방법(General Material Designation)

자료유형표시 및 기술방법에 대한 규정은 모든 규칙들이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를 사용해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¹¹⁾, KCR이 '악보' 또는 'music'을 자료유형으로 사용(5.1.2.1)하는데 반해 NCR이 '樂譜'(5.1.2.1), AACR이 'music'(5.1C1), ISBD(PM)이 'printed music'(1.2.2)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유형이 상이한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된 경우에는 KCR과 NCR 그리고, ISBD(PM)이 주된 구성요소의 자료유형만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AACR은 'Multimedia' 또는

6) 음악도서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연세대학교(악보 12,000점 보유)와 이화여자대학교(악보 19,000점 보유), 한양대학교(악보 약10,000여점 보유)를 조사한 결과 OCLC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경우 통일서명을 제공하고,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사서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시간적 이유로 인해 통일서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자들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7) 小川 昴, 「レコードの整理」, (동경: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1953)

8) 손정표, "클래식음악 레코드의 표제사항의 기술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4권 11호(1967·11): pp. 12-32.

9) 차혜인, "음악녹음자료의 국문통일표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0.

10) 김정열, "음악자료의 통일표제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11) 일반자료표시(GMD : General Material Designations)를 목록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 : 예고의 표시로서 기술대상자료의 포맷에 관해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단점 : 표준적인 용어리스트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완전하게 수용하기 어렵다. 어떤 용어가 발행사항의 어떤 부분인지 또는 어떤 지리적인 사항인지가 애매하다.

남태우,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5집(1988): p.131.

'Kit'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료유형표시를 [악보] 또는 [music]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5.1.6.2 (기술방법)의 예를 보면 자료유형표시를[score]로 한 경우를 볼 수 있어 규정과 예시가 서로 맞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과 이에 따른 적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score'는 '악보의 종류' 표시 (KCR4판 5.3.1.2)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5.1.6.2 (기술방법)

- A collection of ancient piobaireachd, or, Highland pipe music [score]/ [collected by Angus Mackay
- Four small dances ; and, Six Hungarian folksongs [score]/ Bela Bartok ; arranged for junior string orchestra by Gabor Darvas

3.3 대등표제 (Parallel Title)

대등표제(Parallel Title)의 기술방법에 있어 KCR은 대등표제가 둘 이상일 경우 두 번째 기재된 표제만을 등호(=)표시와 함께 대등표제로 기술하고 나머지는 주기사항에 '대등표제' 또는 'Parallel Title'의 도입어구를 사용해 기술토록 하고 있다(5.1.3.2)¹²⁾. 이는 통일표제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이후의 표제는 주기사항에 기재토록 한 것으로 통일표제를 적용하

12) 이 규정은 악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총칙 부분에 모든 자료의 대등표제 또한 악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1.3 대등표제

- 2) 대등표제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활자의 크기나 기재순서에 따라 첫 번째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의 대등표제는 '대등표제'란 도입어구를 사용하여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지 않는다면 구태여 두 번째 이후의 표제를 주기사항에 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NCR(5.1.3.2), AACR(5.1D1) 그리고 ISBD(PM)(1.3.4.2)은 대등표제가 여러개일 경우 등호(=)를 연결해 모두 기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등표제가 여러개일 경우, 본표제 옆에 두 번째 대등표제만 등호(=)로 연결하고 나머지는 주기사항에 '대등표제' 또는 'Parallel Title'의 도입어구를 사용해 기술토록 한 KCR4판 초안의 규정은 대등표제를 이원화시켜 오히려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NCR, AACR ISBD(PM)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표제 옆에 등호표시를 사용해 대등표제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한곳에 모아주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3.4 '악보'의 특수자료표시사항

3.4.1 형태사항(Physical Description Area) 중 Braille or Tactile format에 관한 사항

자료의 형태사항(Physical Description Area) 중 Braille 혹은 Tactile format에 관해서는 오로지 AACR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AACR에 따르면, 점자형태로 된 악보의 경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형 프린트본에 대해 형태사항에 'braille, thermoform' 'large print' 로 표시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5.5B3).

이에 반해 KCR이나 NCR의 '악보' 어디에도 점자형태의 자료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형프린트물에 대한 규칙이나 예시가 없으며,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계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상황과 자료의 종류를 다양하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AACR에서와 같이 이런 형태에 관한 자료의 규정과 예시가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3.4.2 형태사항(Physical Description Area) 중 크기표시(Dimensions)에 관한 사항

크기의 기록방법에 대한 KCR의 규정은 표지의 높이를 센치미터(cm)로 기술하되, 10센치미터 미만의 것은 밀리미터(mm)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5.3). 이러한 '크기'의 표시는 서가의 문제로 인해 기재하는 것인데 현재는 별반 의미가 없어 보이며, 더구나 10cm 크기 이하의 악보가 거의 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크기의 단위를 cm와 mm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NCR은 외형의 크기를 우수리 올림으로 하여 센치미터(cm)로 기술하며, 10센치미터 이하의 것은 센치미터(cm)를 단위로 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5.5.3).

AACR은 센치미터를 기본단위로 하되 우수리는 무조건 올림으로(e.g. if an item measures 17.2 centimetres, give 18 cm.) 할 것과 바운드 된 책의 경우 바인딩의 높이를 측정하고, 크기가 10cm이하의 것은 밀리미터(mm)로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5D, 2.5D1)

ISBD의 경우 센치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리는 무조건 올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3). 따라서, AACR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크기에 대한 기재를 한다면 단위를 cm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3.5 책임표시

책임표시의 기술은 5.1.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쓰여진 용어 어순대로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KCR3.1판에서와 같이 동서는 저자 다음, 양서는 저자명 앞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¹³⁾

4. 결 론

이상에서 KCR4판 초안의 '악보'부분에 대한 각 조문을 일본목록규칙(NCR 1996), 영미목록규칙(AACR2R 1998), ISBD(PM 1991)과 비교해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과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통일표제의 처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악보의 몇몇 조항들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규정과 예시들의 추가와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3판에 비해 KCR4판 초안의 경우 각 자료별 특성에 따른 규정이 세분화되고 예시가 많이 추가됨으로써 적용에 있어 보다 편리성이 가미된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KORMARC과의 규정통일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즉, 현장에서 목록을 할 때 주로 KORMARC 기술규칙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의 통일성유지를 위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둘을 통합하는 시도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서관 현장의 실제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초안작성에 관한 작업이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현장 사서들과의 괴리를 매워갈 수 있는 작업이 수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작업으로 지상공청회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의견을 담아 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參考文獻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13)

(동서) 한글학회 50년사/ 위은이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 한글학회 50년사 /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위은

(양서) Morte Arthure / John Finlayson editor

⇒ Morte Arthure / ed. by John finalyson

<부록> 주요 편목법에 있어서의 '악보' 규칙 비교

KCR4판,2002	NCR,1996	AACR2R,1998	ISBD(PM),1991
5.0 총칙 5.0.1 기술의 범위 5.0.2 기술의 대상 5.0.3 기술의 정보원 5.0.4 기술구조와 요소의 기제순서 5.0.5 기술방법	5.0 총칙 5.0.1 기술의 범위 5.0.2 기술의대상과 그 서지 레벨 5.0.3 기술의 정보원 5.0.4 기술해야할 서지적사항과 그 기록순서 5.0.5 기술의 정조(精粗) 5.0.6 기록의 방법	5.0 총칙 5.0A 범위 5.0B 정보원 5.0C 구두법 5.0D 기술의 수준 5.0E 기술의 언어와 활자 5.0F 오기, 오식 5.0G 엑센트와 다른탈음구분 5.0H 여러정보원을 가진 자료	0. 예비규칙 0.1 범위, 목적 및 이용 0.2 정의 0.3 ISBN의 개요 0.4 구두법 0.5 정보원 0.6 기술의 언어와 문자 0.7 요약과 약어 0.8 대문자 0.9 Examples 0.10 Misprints 0.11 Symbols, 등
5.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5.1.1 본표제 5.1.2 자료종별(임의규정) 5.1.3 대등표제 5.1.4 표제관련정보 5.1.5 권차, 회차, 년차표시 5.1.6 책임표시	5.1 타이틀과 책임표시에 관한 사항 5.1.1 본 타이틀 5.1.2 자료종별(임의규정) 5.1.3 병렬타이틀 5.1.4 타이틀관련정보 5.1.5 책임표시	5.1 타이틀과 책임표시사항 5.1A 예비규칙 5.1A1 구두법 5.1B 본표제 5.1C 자료종별 5.1D 대등표제 5.1E 다른 타이틀정보 5.1F 책임표시 5.1G 총서명이 없는 자료	1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1.1 본표제 1.2 자료종별 1.3 대등표제 1.4 표제관련정보 1.5 책임표시
5.2 판사항 5.2.1 판표시 5.2.2 특정판의 책임표시 5.2.3 부가적 판표시 5.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5.2 판사항 5.2.1 판표시 5.2.2 특정판의 책임표시 5.2.3 부가적 판표시 5.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5.2 판사항 5.2A 예비규칙 5.2A1 구두법 5.2B 판표시 5.2C 판에 관련된 책임표시 5.2D 개정판에 관련된 사항 5.2E 개정판의 책임표시사항	2 판사항 2.1 판표시 2.2 대등판사항 2.3 판의 책임표시 2.4 부가적 판표시 2.5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5.3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5.3.1 악보의 종류표시	5.3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5.3.1 악보의 종류표시 5.3.2 악보종류의 병렬표시	5.3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5.3A 예비규칙 5.3B 악보의 종류	3. 악보의 특별사항 3.1 악보의 특별표시 3.2 대등악보 특별표시
5.4 발행사항 5.4.1 발행지, 배포지 5.4.2 발행처, 배포처 5.4.3 발행년, 배포년 5.4.4 제작사항	5.4 출판, 배포 등에 관한 사항 5.4.1 출판지, 배포지 등 5.4.2 출판처, 배포처 등 5.4.3 출판년, 배포년 등 5.4.4 제작사항 (제작지, 제작자, 제작년)	5.4 출판, 배포 등 5.4A 예비규칙 5.4A1 구두법 5.4B 일반규칙 5.4B2 초기악보 5.4C 출판지, 배포 등 5.4D 출판처, 배포처 등 5.4E 출판지, 배포지의 역할에 대한 기술 5.4F 출판 및 배포일 등 5.4G 제작지, 제작자, 제작일	4. 출판, 배포 등 사항 4.1 출판지, 배포지 4.2 출판처, 배포처 4.3 배포자 사항 4.4 출판년, 배포년 4.5 제작지 4.6 제작자명 4.7 제작년
5.5 형태사항 5.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5.5.2 삽화표시 5.5.3 크기 5.5.4 말림자료	5.5 형태사항 5.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5.5.2 삽도, 초상, 지도 등 5.5.3 크기 5.5.4 부속자료	5.5 형태사항 5.5A 예비규칙 5.5A1 구두법 5.5B 자료의 범위 5.5C 삽화표시 5.5D 크기 5.5E 말림자료	5. 형태사항 5.1 특정자료 종별 및 자료범위 5.2 형태적 세부항목 5.3 크기 5.4 말림자료
5.6 총서사항 5.6.1 총서의 본표제 5.6.2 총서의 대등표제 5.6.3 총서관련정보 5.6.4 총서의 책임표시 5.6.5 총서의 ISSN 5.6.6 총서의 권호 5.6.7 하위총서	5.6 시리즈에 관한 사항 5.6.1 본 시리즈명 5.6.2 병렬 시리즈명 5.6.3 시리즈명 관련정보 5.6.4 시리즈의 책임표시 5.6.5 시리즈의 ISSN 5.6.6 시리즈 번호 5.6.7 하위시리즈의 서지적 사항	5.6 시리즈에 관한 사항 5.6A 예비규칙 5.6A1 구두법 5.6B 시리즈기술	6. 총서사항 6.1 총서의 본표제 6.2 총서의 대등표제 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6.4 총서의 책임표시 6.5 총서의 ISSN 6.6 총서의 권호
5.7 주기사항 5.7.1 주기의 범위 5.7.2 기술방법 5.7.3 주기의 종류와 기제순서	5.7 주기사항 5.7.1 주기 5.7.2 기록의 방법 5.7.3 주기의 종류	5.7 주기사항 5.7A 예비규칙 5.7A1 구두법 5.7B 주기	7. 주기사항
5.8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5.8.1 표준번호 5.8.2 등록표제 5.8.3 입수조건표시	5.8 ISBN(출판자번호), 입수조건사항 5.8.1 ISBN(출판자번호) 5.8.2 등록표제 5.8.3 입수조건·평가	5.8 표준번호 및 사용영역에 관한 조건 5.8A 예비규칙 5.8A1 구두법 5.8B 표준번호 5.8C Key-title 5.8D 사용영역에 관한 조건 5.8E Qualification 5.9 추가항목 5.10 여러유일도로 구성된 자료 5.11 복사, 사진복사 및 다른 복제품	8. 표준번호와 입수조건사항 8.1 표준번호 8.2 입수조건사항